



안녕하세요~
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루입니다.

먼저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행사를
위해 다양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
2020. 4. 15.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
주체, 선거운동 나이 기준 및 평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
같습니다.



(선거운동 주체)

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.
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
정당이나 후보자,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
나누어 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.



(선거운동 나이 기준)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
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선거운동을
할 때에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.



(평소 할 수 있는 선거운동)

평소에는 문자메시지 발송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
(e-mail)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유튜브, 트위터 등 온라인
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많은 도움 되셨나요?
다음 회차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례와
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. 감사합니다.